

보도시점 4. 16(수) 조간 < 4. 15(화) 12:00 >

중소벤처기업부-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추진

-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와 폐업 소상공인 조기취업을 위한 협의회 개최

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, 장관 오영주)와 고용노동부(이하 고용부, 장관 직무대행 김민석)는 15일(화), 전략적 인사교류*의 후속조치로 「전략협업 협의회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,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·과장급 42개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 추진(25.1.13~), 중기부 인력정책과장-고용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직위 교류

두 부처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, 협업과제는 아래와 같다.

협업과제명	주요 내용
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	▲ 일자리 우수기업인 「 참 괜찮은 강소기업 」을 고용부와 중기부가 공동 선정하고 고용센터가 채용지원 연계 등 종합기업지원서비스 제공
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	▲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(폐업(예정) 소상공인 취업교육)이수 후 취업 시 고용부 고용촉진장려금 (취업취약계층 채용 사업주 장려금) 연계 지원
기업채용지원 연계 강화	▲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 와 고용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간 연계 를 통해 기업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한 시너지 창출

전략협업 협의회에서 두 부처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,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·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이번 협의회 이후에도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·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중기부 김우중 정책기획관은 “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양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수행체계를 구축·운영함으로써,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하였다.

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“고용노동부와 중기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, 취업취약계층은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생업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정훈	(044-204-734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은	(044-204-7342)
	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준호	(044-204-7440)
		담당자	사무관	나기환	(044-204-7791)
			사무관	이영순	(044-204-7443)
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재도약과	책임자	과 장	장상만	(044-204-7850)
		담당자	사무관	송양훈	(044-204-7845)
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기업일자리지원과	책임자	과 장	신재경	(044-202-7227)
담당자		사무관	공세현	(044-202-7314)	



1. 사업개요

-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,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·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

2.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경영위기 및 폐업(예정) 소상공인,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
- (지원유형) 원스톱폐업지원, 특화취업지원, 재기사업화지원 등 3개
 - ① (원스톱폐업지원) 폐업(예정)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지원, 법률자문,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
 - * (사업정리컨설팅)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, 집기·시설 처분 방법, 사업장 양수 등 관련 (점포철거지원)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(최대 400만원)
 - (법률자문)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 - (채무조정)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등
 - ② (특화취업지원) 취업 교육, 전직장려수당 지급, 취업정책 연계 지원
 - * (취업교육) (기초) 자아성찰, 취업시장 이해 등 (심화) 1:1심층상담, 그룹토의 등
 - (전직장려수당) 취업활동 시 60만원 + 취업성공시 40만원 지급(총100만원)
 - ③ (재기사업화지원) 경영위기·폐업(예정)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진단 후 맞춤형 교육 및 1:1 컨설팅, 사업화 자금* 지원
 - *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(자부담비율 50%)
- (지원절차)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ope.sbiz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1. 사업개요

-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

2. 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모든 사업주(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대규모 기업)
- (지원요건)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
 -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국민취업지원제도 등)을 이수한 사람
 -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
 -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
- (지원수준)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사업규모에 따라 월 30~60만원
- (지급기간 및 주기)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
 - *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
- (지원절차)

